

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
(공개)

기업투자 ·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

2023. 3. 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...	2
1. 이차전지·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 ...	2
2. 탄소중립·청정에너지 기반 확충	4
3. 물류 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·투자 촉진 ...	6
III.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	8
IV. 향후 계획	10

I. 추진 배경

1 수출·투자 등 실물부문 어려움 심화

□ 가파른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, 반도체 경기하강 영향 등으로 수출·투자 등 실물부문 어려움 확대

○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폭 무역적자 지속

* 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2.8) 6.5 (9) 2.3 (10)△5.8 (11)△14.2 (12)△9.7 ('23.1)△16.6 (2)△7.5
무역수지(억달러): △94 △38 △67 △71 △48 △127 △53

○ 투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작년 하반기 이후 공급망 애로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, 기업 투자심리는 악화 흐름

* 설비투자(전기비, %): ('21)9.0 ('22)△0.7[(1/4)△3.9 (2/4)0.5 (3/4)7.9 (4/4)2.3]
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(p): ('22.10)96 (11)92 (12)92 ('23.1)91 (2)90 (3)88

⇒ 주요 업종별 수출·투자 지원대책의 마련·실행과 함께 기업 투자현장의 규제, 행정절차 지연 등 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투자활력 뒷받침 필요

2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어려움

□ 글로벌 스탠더드,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과도한 형벌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*

* ('19, 한경연) 2,657개 처벌항목 중 인신구속형 처벌이 과도(89%)해 기업활동 위축
(‘21, 전경련) 경영자·기업을 전과자로 만드는 과도한 처벌 개선해야 경제활성화 가능

○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은 국민·기업들의 경제적 자유·창의를 저해하고 낙인효과, 전과자 양산 등 각종 부작용 초래

○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형벌 등 애로 가중* 및 경영심리 악화**

* 범죄자 중 자영업자, 저소득층 비율(검찰·경찰 범죄통계, %): ('20) 17.5, 38.6 ('21) 19.9, 39.1

** 소상공인 BSI(전망) : ('22.10) 91.3 (11) 78.9 (12) 82.0 ('23.1) 77.8 (2) 72.5

⇒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형벌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·개선할 필요

Ⅱ.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

◇ 이차전지·전기차, 에너지,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

⇒ 2.8조원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·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지원
→ 고용 창출 +1.2만명 기대

<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개요 >

분야	프로젝트
이차전지·전기차	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
	이차전지 R&D 센터 증설
	오창 이차전지 소재 R&D 센터 증설
	전기차 기계식 주차 및 충전 인프라 개선
에너지	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
	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
물류	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활성화
	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
	마산 자유무역지역 산단지정

1 이차전지·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

◇ 이차전지·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R&D,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 및 규제 개선 추진

□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

○ (현황) 이차전지 공장 건설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고자 했으나, 일선 허가기관(관할 소방서) 1차 협의 결과 건축물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 발생

- 시간·비용 큰 폭 증가 + 해외 계약업체와의 계약 불이행 등 우려

○ (개선) 기업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*(23.1월 완료)을 통해 철거·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

* 소방산업기술원은 기업측의 안정성 평가 신청 당시(22.12월) 안전성 평가 일정이 마감되었으나, 해당 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평가절차 진행

○ (기대효과)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충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어 관련 산업분야 수출 및 경쟁력 확보 지원

□ 이차전지 R&D 센터 증설

- (현황) 종전 공공 연구원 부지였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민간 기업이 부지를 매입(11년) →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증축 곤란*
 - * 낮은 건폐율(20%)·용적률(100%) 적용
- 증축에 필요한 용도변경(자연녹지 → 1종 주거)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필요
- (개선) 기초·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초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변경*(~'23.2분기) 후 부지 용도변경 추진
 - *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3·4월 예정)에서 최종 결정 예정
- (기대효과) 이차전지에 대한 R&D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어 관련 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사례 마련

□ 오창 이차전지 소재 R&D 센터 증설

- (현황) 이차전지 소재 R&D 센터 증설을 추진 중이나,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*으로 지정되어 있어 증설 불가능
 - *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제조업체·R&D 시설 설치가 제한
- (개선) 투자 효과, 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同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('22.11월, 농림부)
- (기대효과) 이차전지 기초소재에 대한 R&D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어 관련 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전기차 기계식 주차 및 충전 인프라 개선

- (현행) 전기차*는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**, 충전 관련 안전 기준 부재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
 - * 중형 전기차 무게: (EV6) 2,160kg, (아이오닉6) 2,055kg, (타이칸GTS) 2,295kg
 - ** 허용 차량무게: (중형 기계식주차장) 1,850kg, (대형) 2,200kg 이하
- (개선) (1단계)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차량 무게 등 관련 안전 기준을 정비('24.2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개정, 국토부)
 - (2단계)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('23.3월 실증사업 개시(계약 및 주차장 건설착수) 및 '24.3월 운영개시 예정)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마련('25.3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, 국토부)
- (기대효과) 전기차 인프라 확대,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운전자 편의성 제고

◇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·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규제개선 추진

□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

- (현황) 생산기지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등 다수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나, 기업-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추진에 애로
 -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관련 항로개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느 곳에 투기할 것인지에 대해 기업-당진시간 이견* 발생
 - * 기업측은 평택항 내 투기장에 투기를 검토하였으나, 지역민원 발생(지역내 부지 조성기회 상실) 등을 우려한 당진시가 당진항 내에 투기하는 방안 제시
 - 최종 사업실시계획 고시를 위해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·해역이용영향평가(해수부) 및 공유수면점용·사용(당진시) 등 필요
- (개선) 쟁점인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대해 기업측-당진시간 이견을 조율*(기재부, 산업부)하여 관련 협약 체결(3.3일 예정)
 - *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, 친수시설(수변공원 등)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
 - LNG 생산기지 건설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·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동시 협의*
 - * 해상교통안전진단('22.12.30), 해역이용평가('23.01.10) 병행협의 완료
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(산업부) 완료예정(3월말)
- (기대효과) 적기 사업추진 및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관리 지원

□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

- (현황) 저장탱크 설치를 위해 신규 부두시설* 확보가 필요하나, 同 시설이 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투자 진행에 어려움

* (투자대상) 20만㎥ 저장탱크 2기, 27만㎥급 LNG 부두, 2만㎥급 벙커링 부두

- 신규 부두시설 설치 및 이에 따른 항로 변경 등은 주요한 변경사항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나, 항만기본계획의 차기 변경시기*('25년 예정) 감안시 투자진행 차질 우려

* (항만법) 10년 단위의 항만기본계획 및 5년 단위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되,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, 항만의 효율적 개발·관리·운영 필요시 수시 변경 가능

- (개선) 사업추진 필요성,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, 신규 부두시설 반영 및 인접항로 삭제* 등 항만기본계획을 적기에 수시 변경('22.9월, 해수부)

* 인접항로 삭제의 항만운영에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우선 삭제하고, 추후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대체항로에 대한 검토 예정

- 항만기본계획 변경 후 사업계획도 신속히 승인*('22.10월, 산업부)

* 법정 검토기간 20일 → 7일로 앞당김

- (기대효과) 선박용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정연료 사용 확대 지원

3

물류 산업 지원을 통한 수출 · 투자 촉진

◇ 수출·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·스마트 물류 산업의 기반 시설·제도·인프라 등 규제개선 추진

□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활성화

- (현황)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* 보급 제약으로 관련 배터리 교환 인프라**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

* 배터리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제공업체가, 배터리 제외 차체는 차량 구매자가 소유

** 배터리 방전시 배터리 교환기에서 다른 완충 상태의 배터리(배터리 구독서비스 제공업체 소유)로 교체 → 충전시간 획기적 단축(2~3시간 → 1분 이내) 가능

- 상기 유형 전기 이륜차는 보조금 지급기준 부재* 및 보조금 미지급에 따른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활용 저조

* 현행 보조금체계상 배터리에 기반한 성능 중심으로 전기 이륜차 보조금 산정

- (개선)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 마련('23.2분기까지 보조금 지급지침안 마련, 환경부)

- (기대효과)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관련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

- 혁신적인 배터리 교환 시스템 확충으로 충전시간 단축 등 이용자 편의 제고 + 친환경 이륜차 판매·보급 활성화

□ 항만배후단지 면적기준 제한 완화

- (현황) 항만배후단지 內 물류센터 추가 구축을 추진 중이나, 임대면적 규모제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

- 입주기업별 임대면적은 15만㎡로 제한되고, 해수부 장관 승인*시 15만㎡ 초과 가능하나, 승인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의 활용도 제약

*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대면적 조정 가능(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)

- (개선) 임대면적 초과가 가능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요건에 스마트 물류, 글로벌물류센터(GDC) 등 자동화·대형화를 통해 수출·투자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승인요건 구체화 ('23.2분기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, 해수부)

- 15만m² 초과 임대 수요기업을 발굴·승인하기 위한 절차* 마련 병행

* (예)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전 사전 설명회 실시

- (기대효과)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대형투자·스마트화 가능 → 부가가치 창출능력 향상에 따른 수출 증가

□ 마산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

- (현황)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시설 등이 노후화('70년 지정)되었으나,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* 건폐율 제한 및 고도화 추진에 한계**

* 7개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 자유무역지역만이 산업단지에 미해당

** 건폐율 제한(일반공업지역 70%<산단 80%), 스마트그린산단, 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단 지원사업 배제

- (개선)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'23.3분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)
- (기대효과)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가 증가하고, 산단 고도화 등 지원을 통해 50년 이상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기지로 전환

Ⅲ.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

1 총괄

□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·정책적 검토*를 거쳐 108개 개선**

* 원팀 협업체계(기재부·법무부·법제처·법제연)와 3대 원칙(비교형량, 과잉금지, 일관성)하에 검토

**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,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호법익이 상당한 규정은 현행유지

-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 활용해 개선하고, 21개는 형량 조정
- 부문별로는 국민·기업들의 자유·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 형벌 62개, 생활밀착형 규정 23개, 사문화된 규정 23개 개선

2 세부 개선방안

① (주요 경제 형벌규정) 공정거래법, 관광진흥법 등 62개 규정 개선

* 분야별 : 경제(19개), 산업(21개), 건설·건축·환경(11개), 서비스·보건·의료(11개)

- ①기업의 자유·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, ②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, ③유사입법례 대비 형벌·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

< 주요 개선내용 >

구성요건	기존	개선
① (공정위)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호		
배제적 남용행위*를 한 자 *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남용행위	징역 3년 이하, 벌금 2억원 이하	시정조치 후 형벌
② (과기부)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4호		
양도,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, 상속 시 미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	징역 1년 이하, 벌금 5천만원 이하	과태료 5천만원 이하
② (기재부)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4호		
관세청장,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벌금 1천만원 이하	과태료 1천만원 이하
③ (문체부) 관광진흥법 제83조 제1항 제6호		
공인기준 등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	징역 2년 이하, 벌금 2천만원 이하	과태료 1백만원 이하
③ (환경부)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 제2호		
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	벌금 5백만원 이하	과태료 5백만원 이하

② (생활밀착형 규정) 식품위생법, 공인회계사법 등 23개 규정 개선

- 5년 간 입건수 1천 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·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* 개선

* 5백만원 이하 소액벌금형 규정을 낙인효과,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개선

< 주요 개선내용 >

구성요건	기존	개선
● (식약처)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		
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승계일 1개월 내 미신고한 자	징역 3년 이하, 벌금 3천만원 이하	징역 1년 이하, 벌금 1천만원 이하
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 사용한 자	징역 3년 이하, 벌금 3천만원 이하	벌금 3백만원 이하
● (금융위)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6항 제2호		
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	벌금 3백만원 이하	과태료 3백만원 이하
● (산업부)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3호		
양도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	벌금 5백만원 이하	과태료 3백만원 이하
● (해수부) 선원법 제177조 제9호		
선원명부, 선원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임금대장 등에 관한 서류 미보관한 자	벌금 5백만원 이하	과태료 5백만원 이하

③ (사문화된 규정) 전자어음법,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23개 규정 개선

-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·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

< 주요 개선내용 >

구성요건	기존	개선
● (법무부) 전자어음법 제22조 제3항		
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	징역 1년 이하, 벌금 3천만원 이하	과태료 5천만원 이하
● (과기정통부) 소프트웨어진흥법 제77조 제2항		
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	벌금 5백만원 이하	과태료 1천만원 이하
● (산업부) 항공우주산업법 제21조		
성능검사·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기기류·소재류를 사용한 자	벌금 5백만원 이하	형벌규정 삭제 후 항공안전법으로 규율

IV. 향후 계획

1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

① 규제혁신전략회의 발표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(계속)

- 경제 규제혁신 TF*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한 지속적 이행 점검
 - * 1차 TF('22.7.23), 2차 TF('22.9.5), 3차 TF('22.10.17), 4차 TF('23.2.10)
- 관련 규정 개정 등 소관부처의 법적·행정적 조치 실시여부 외에도 개정에 따른 실제 효과 발생, 개정 규정에 대한 홍보 노력 등도 점검하여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추진

② 수출·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등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(계속)

- 경제단체 및 주요 협회·단체 간담회, 장·차관 기업현장 방문, 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강구

2 경제 형벌규정 개선

① 경제 형벌규정 2차 과제 입법절차 추진(~5월)

- 법제처 중심 일괄개정절차로 진행(1차 과제*와 동일)
 - * 일괄개정으로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 및 국회 제출 완료('23.1.19)

②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 추진(~7월)

- 연구용역, 민간 건의 등을 통해 구성된 4,000여 규정 pool 중 국민체감도가 높고 개선수요가 큰 규정 등을 상기 원칙·체계* 하에 정비 추진
 - * 부처 검토(3월) → 연구용역(4월) → 법무부·법제처 검토(6월) 및 개선안 확정(7월)

③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 입법절차 추진(~9월)

- 9월 정기국회 내 제출 목표로 정부내 절차 추진